

충남대학교 대학원 산림자원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

[제정 2013.2.22.]

개정 2015.3.12.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(이하 “규정” 이라 한다)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산림자원학과(이하 “학과”라고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논문제출자격)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제4조(논문제출자격시험) ①시험과목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하되 석사학위 과정은 3과목,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을 응시한다.

②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 단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.

③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.

제5조(외국어능력 기준) ①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.(2015.3.12.)

1. TEPS 554점 이상
2. TOEIC 680점 이상
3. TOEFL(CBT) 210점 이상
4. TOEFL(iBT) 78점 이상

제6조(논문지도위원회) ①논문지도위원회 구성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.

②박사학위과정은 논문계획발표 6개월 전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논문지도위원 3인을 구성한다.

제7조(학술지게재 의무조건) ①박사학위과정은 학위논문주제와 연관된 논문을 학진등재지에 2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. 단, 외국인의 경우 학진등재지에 1편 이상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(2015.3.12.)

②석사학위과정은 학위논문주제와 동일한 논문을 학진등재후보지 이상에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.

1. 주저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.
2. 논문 심사결과가 “저자수정 후 게재” 이상이 될 경우에만 인정한다.
3.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8조(시행세칙의 개정)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5.3.12.)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국어능력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 시행세칙을 적용한다.